

2022 시정권고 사례집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2022 시정권고 사례집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보호

제2장 명예훼손

제3장 범죄사건 보도

제4장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5장 아동학대사건 보도

제6장 신고자 등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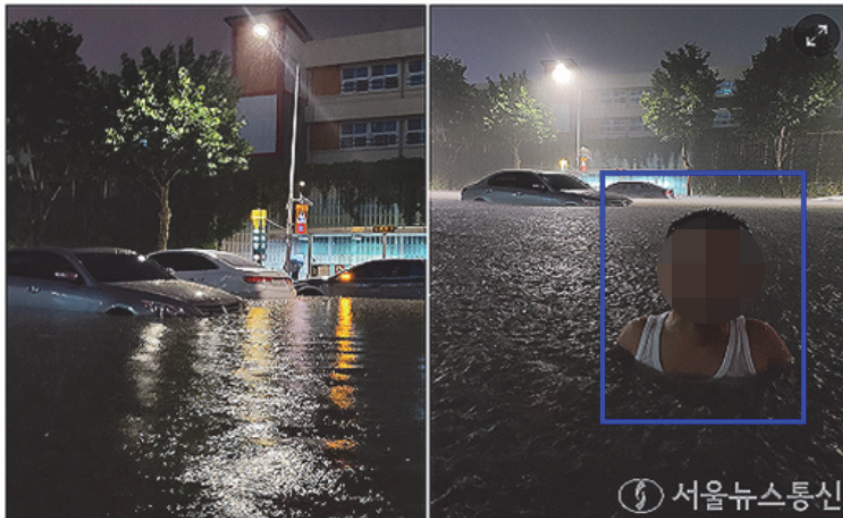
제1장 사생활 보호

사례. 1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2-901호
매 체 명	서울뉴스통신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8일 밤 대치동 학원가 물에 잠겼다

1. 보도내용

「8일 밤 대치동 학원가 물에 잠겼다」제하의 사진



8일 저녁 서울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집중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2.8.8) / 사진 = 프리랜서 김태원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가 물에 잠겼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침수로 물속에 갇힌 한 아동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동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2-893호
매 체 명	일간경북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1일 9면
기사제목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1. 보도내용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사인(私人)의 초상 공표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자체의 가정방문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낙상 상황의 노인을 발견해 구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조 당시 촬영 사진 속 노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안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조대상자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 연예인 가족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2-1077호
매 체 명	YTN star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28일 가요면
기사제목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1. 보도내용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배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과거 방송 출연으로 당사자(배우자)의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편에 관한 부정적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내밀영역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2-345호
매 체 명	뉴스시스(NEWSIS)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2월 23일 문화면
기사제목	“백윤식과 첫날밤 잊지 못해”...30살 연하 前연인 책 출간

1. 보도내용

「배우 백윤식(75)의 전 연인인 곽모(45)씨가 에세이를 출간한다. 백윤식과 30세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임신을 계획했지만, 이별하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담는다. (중략)

이 책은 프롤로그와 총 4개 목차로 구성 돼 있다. 곽씨는 책에서 백윤식을 영화 ‘싸움의 기술’(2006)에 출연한 T로 묘사했다. 첫 만남, 임신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도 언급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배우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유명 배우와의 만남과 이별 과정에 대한 에세이를 출간한다고 보도하면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배우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관계 묘사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

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5 내밀영역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2-877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6일 이슈면
기사제목	“OO OO OO이라니...” 대구 여교사 남편이 제자와 외도 의심한 까닭

1. 보도내용

「“OO OO OO이라니...” 대구 여교사 남편이 제자와 외도 의심한 까닭」의 제목

「대구의 한 [REDACTED] 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REDACTED] 모 고교 [REDACTED]인 A [REDACTED]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략)

이번 사건은 A씨 남편 B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아내가 [REDACTED] [REDACTED]로 인한 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의료진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소재지 등 관련 정보, 성별, 나이, 근로계약 유형, 담당교과 등 각각을 조합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공표하고 병원 내원 당시 진단받은 질병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적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인(私人)인 사건당사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질병명을 공개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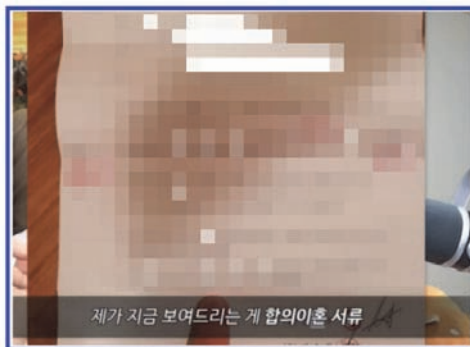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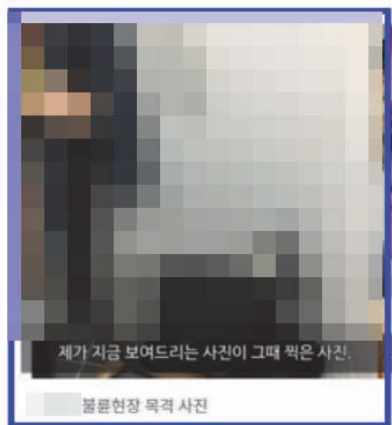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6 내밀영역 공개 ③

의결번호	제2022-1150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14일 엔터면
기사제목	돌싱글즈 이소라 이혼사유 불륜 펜션에서 남자와 있다 딱 걸린 현장 + 영상

1. 보도내용

「돌싱글즈 이소라 이혼사유 불륜 펜션에서 남자와 있다 딱 걸린 현장 + 영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방송된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에 관하여 한 유튜버가 폭로한 과거 행적을 보도하면서, 해당 출연자의 불륜 관련 대화메시지나 현장사진, 이혼서류 등을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이혼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스스로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나 이혼에 관한 부부간 합의내용 등 사생활의 내밀 내지 사사적 영역에 속할 만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7 통신비밀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2-1105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15일 엔터면
기사제목	“술 먹이고 성관계, 사귀니 바람 피워”...인기 아이돌 ‘양다리’ 폭로 나왔다 (+CCTV)

1. 보도내용

「“술 먹이고 성관계, 사귀니 바람 피워”...인기 아이돌 ‘양다리’ 폭로 나왔다 (+CCTV)」 제하의 사진 및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폭로자의 상세한 주장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관계 등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폭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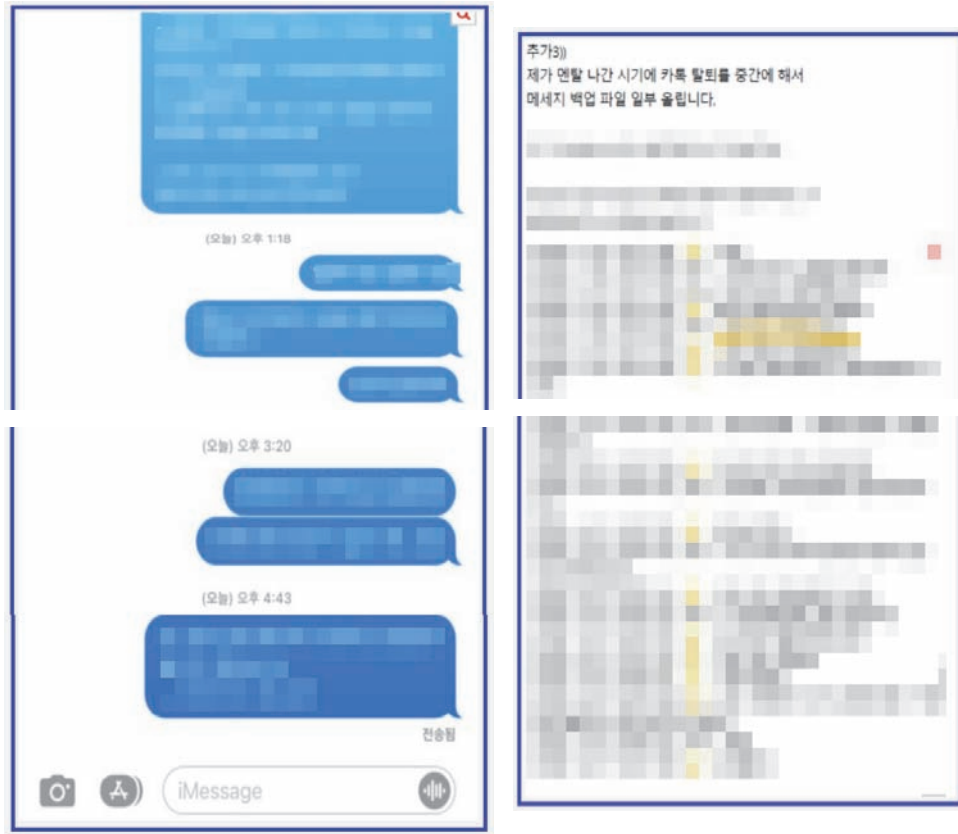
사례. 8 통신비밀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2-1146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15일 엔터면
기사제목	OOFC 축구선수 A씨 누구 OOO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

1. 보도내용

「OOFC 축구선수 A씨 누구 OOO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의 제목
「OOFC 축구선수 A씨 누구 OOO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현직 축구선수에 관한 전 연인의 폭로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들과 함께 당사자 간 사적인 대화메시지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두문자를 사용하고 초상 사진을 음영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구단은

물론 실명과 일치하는 두문자와 비식별조치가 불충분한 초상사진을 공개한 점,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할 만한 대화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표한 점 등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장 명예훼손

사례. 9 명예훼손

의결번호	제2022-991호
매체명	sportschosun.com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12일 연예면
기사제목	“너무 비틀대 넘어질 뻔”... ‘마약 투약’ ○○○, CCTV까지 퍼졌는데 침묵 [종합]

1. 보도내용

「“너무 비틀대 넘어질 뻔”... ‘마약 투약’ ○○○, CCTV까지 퍼졌는데 침묵 [종합]」의 제목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 투약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고 마약 투약 혐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분엔 불과한 시점에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3장 범죄사건 보도

사례. 10 피의자 신원공개

의결번호	제2022-904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9일 시사면
기사제목	시험지 빼돌린 광주 고교생...“서울대 꿈꾸던 ○○○○”

1. 보도내용

「시험지 빼돌린 광주 고교생...“서울대 꿈꾸던 ○○○○”」의 제목

「한밤중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광주
학생이 ○○ ○○을 역임하는 등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략)

그러면서 A군은 이었던 B군을 두고

”이라며 “그 친구의 목표가 애초에 컴퓨터도 잘해서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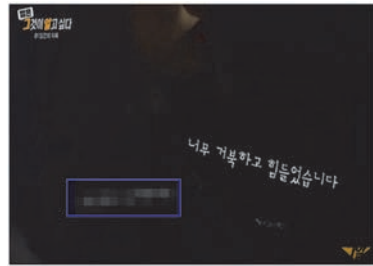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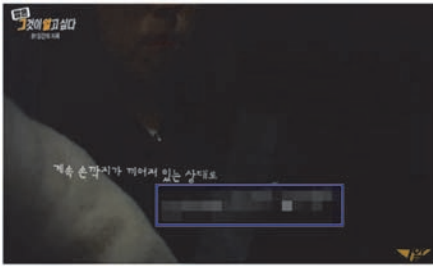
제4장 성폭력피해자 보호

사례. 11 성범죄수법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2-511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3월 29일 Issue면
기사제목	“손각지 끼더니 XX 만졌다” 숨진 공군 女 중사가 가해자에 당한 일(영상)

1. 보도내용

「“손각지 끼더니 XX 만졌다” 숨진 공군 女 중사가 가해자에 당한 일(영상)」 제하의 사진



「이 중사 진술에 따르면 장 중사는 손깍지를 낀 채 그의 [REDACTED] (중략)

당황한 이 중사가 추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말을 걸었지만 부적절한 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장 중사는 [REDACTED] [REDACTED] 강제 추행을 했는데요.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공개됐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재연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상태를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

의결번호	제2022-1010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15일
기사제목	역무원 살해범, 피해자에 먼저 성범죄 저질러...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1. 보도내용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폐하겠다고 협박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 중이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위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폐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협박의 수단인 촬영물 등의 구체적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공표된 바 없고 이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단정할 경우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 간 근거 없는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5장 아동학대사건 보도

사례. 13 아동학대행위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2-36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3월 2일 지방면
기사제목	[사건의 재구성] 어린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게 삼은 그놈...뒤늦은 눈물

1. 보도내용

「(전략) A씨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중략)

그러던 2009년 8월, A씨의 악랄한 범행은 시작됐다.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9세였다.

그는 평소

저질렀다.

계속된 범행으로 B양은 14세에 첫 임신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협박과 강간을 수없이 반복했다.

. 휴대
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이동경로를 감시하기도 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비록 위 기사의 보도 목적이 아동 학대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6장 신고자 등 보호

사례. 14 진술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2-84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2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이 밝힌 진실 “○○가 그랬어요”

1. 보도내용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이 밝힌 진실 “○○가 그랬어요”」의 제목

「(전략)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

(중략) 수사 초기 엄마 B씨는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C양을 씻겼고, 물기도 닦아줬으며 옷걸이로 딸을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때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가. 대상보도 중 진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의 가해 수법이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부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데에 ○○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의 배경이나 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사건 진술인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진술인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와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2 시정권고 사례집

사회적 법익 침해

- 제1장 차별 금지
- 제2장 재난 보도
- 제3장 범죄 묘사
- 제4장 성관련 보도
- 제5장 자살 보도
- 제6장 마약 및 약물보도
- 제7장 폭력 묘사
- 제8장 충격·혐오감
- 제9장 기사형광고
- 제10장 기사 제목



제1장 차별 금지

사례. 15 장애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2-1113호
매 체 명	인터넷 아주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2일
기사제목	국가돈은 ‘눈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

1. 보도내용

「국가돈은 ‘눈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의 제목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6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2-1111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9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여의도 불꽃축제 논란 중국인 같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1. 보도내용

「여의도 불꽃축제 논란 중국인 같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의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열리지 않았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시민 100만여명이 여의도에 몰렸으나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중국인 못지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국적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의도 불꽃축제 참가자들의 시민의식 부족을 비판하면서 “중국인 같다”, “중국인 못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에 시민의식의 결여 내지 그로 인한 폐해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민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장 재난보도

사례. 17 참상을 상세히 보도

의결번호	제2022-1200호
매 체 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30일 SNSPICK면
기사제목	실시간 이태원 압사사고 더 심각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1. 보도내용

「실시간 이태원 압사사고 더 심각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참상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심폐소생 중인 압사피해자 등 생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가 드러난 현장 사진을 공표하였다.

비록 참사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일반 노상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던 희생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희생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목적을 넘어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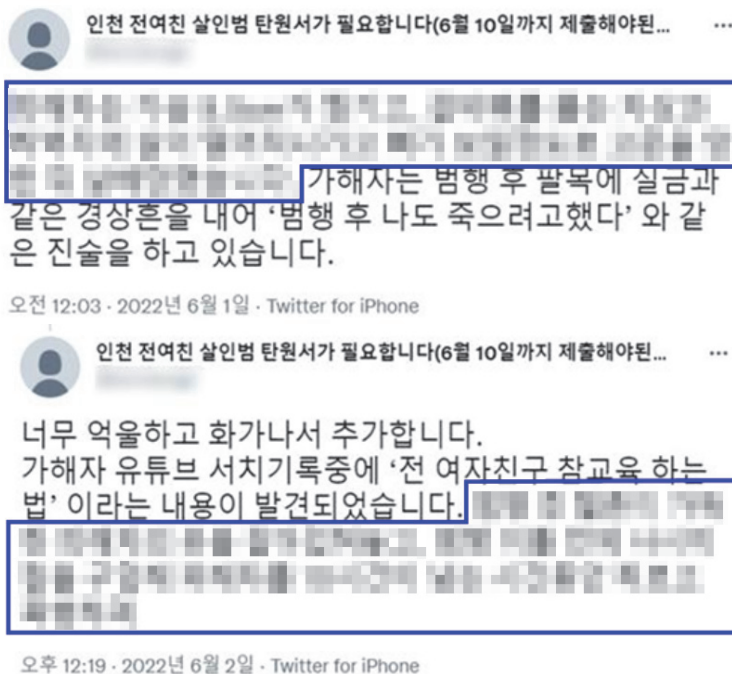
제3장 범죄 묘사

사례. 18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의결번호	제2022-675호
매 체 명	뉴스스(NEWSIS)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6월 4일 수도권면
기사제목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1. 보도내용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제하의 사진



「인천 한 빌라에서 또래 여성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게시물이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고 있다. (중략)

그러면서

다.

이어 “A씨의 유튜브 검색기록 중 ‘전 여자친구 참교육하는 법’이라는 내용이 발견됐다”면서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감형을 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씨가 짓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일부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9 모방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 상세 설명

의결번호	제2022-765호
매 체 명	인터넷 광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5일 사회면
기사제목	[사건 인사이트] ‘화살총 습격’ 든 20대 습격에 병 뚫린 여수 봉산파출소

1. 보도내용

「20대 남성의 ‘화살총 습격’에 여수지역 파출소가 병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지난 2월 [redacted]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dacted]

[redacted] 크기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화살총을 이용해 파출소를 습격했다가 검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인 '화살총'의 구조, 구입 및 개조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범행도구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구입 방법 및 가격, 발사 방식,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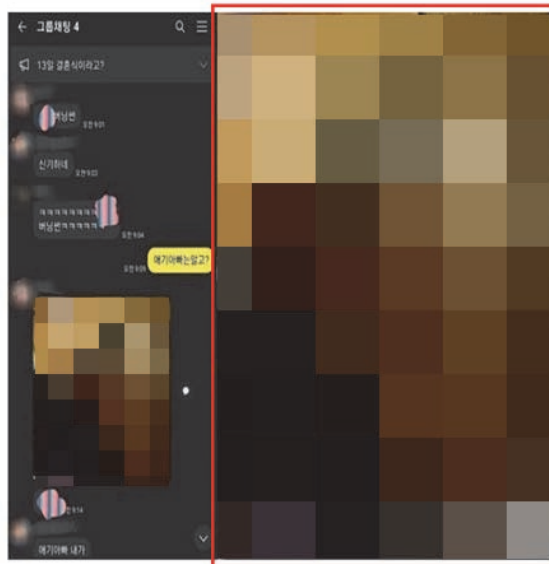
제4장 성관련 보도

사례. 20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

의결번호	제2022-167호
매 체 명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월 16일 사회면
기사제목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1. 보도내용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두 돌이 지난 여아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 모양 사진을 공표하였다.

해당 손 모양이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손 모양을 부각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5장 자살보도

사례. 21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2-779호
매 체 명	서울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0일 9면
기사제목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女하사 또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성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19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 [REDACTED]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하사는 [REDACTED]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속 부대(중대), 계급, 나이,

임관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2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묘사

의결번호	제2022-819호
매 체 명	한국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14일 10면
기사제목	“물이 찼다”... 시속 35km로 바다 돌진 유나양 가족 3명 시신서 수면제 검출

1. 보도내용

「“물이 찼다”... 시속 35km로 바다 돌진 유나양 가족 3명 시신서 수면제 검출」의 제목

「전남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블랙박스에서

(중략)

경찰은 또 조양 가족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조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짐작케 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중략)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조양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5월31일0시40분에 완도항 인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287cm로 만조 때였다.

조양 가족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자살 실행 당시의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3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

의결번호	제2022-30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월 28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1등급→3등급 떨어진 수험생, '성적 비관'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1등급→3등급 떨어진 수험생, '성적 비관' 극단적 선택」의 제목
「경기도 ○○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 ○○신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18)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수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드러난 일부 사실로 자살 동기를 단정하고, 특히 이를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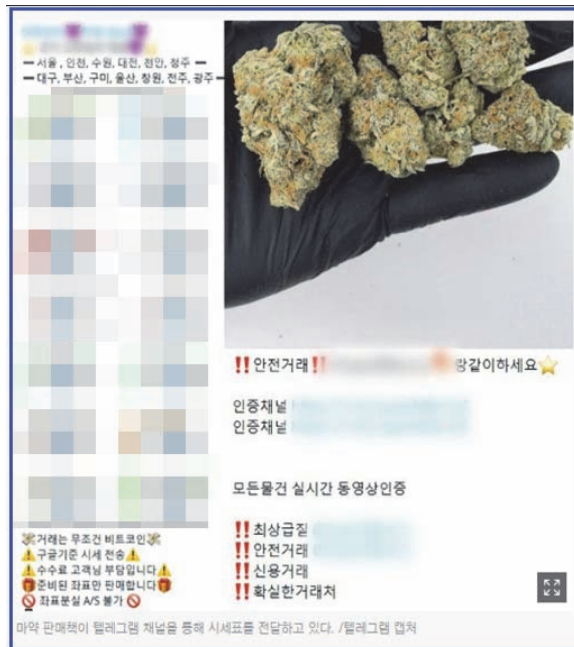
제6장 마약 및 약물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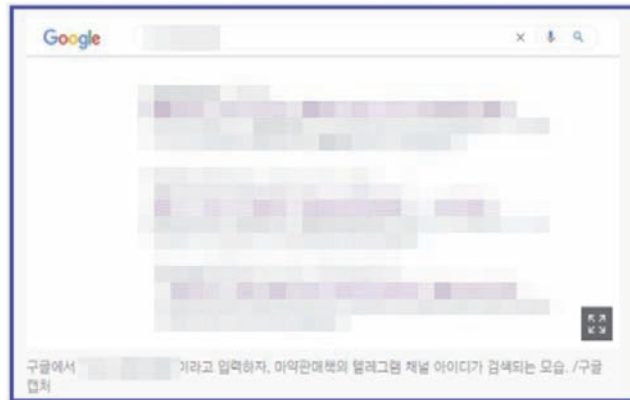
사례. 24 마약 명칭·가격·구입방법 등 보도

의결번호	제2022-1126호
매 체 명	조선비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2일 IT면
기사제목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

1. 보도내용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 제하의 사진





「“
”

지난 1일 구글 검색에서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검색해봤다. 를 뜻하는 마약 세계의 은어다. 엔터를 누르자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수십개의 트위터 멘션(글)이 검색됐다.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마약이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점차 온라인화 되는 것이다.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가격,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구입방법을 직접 거론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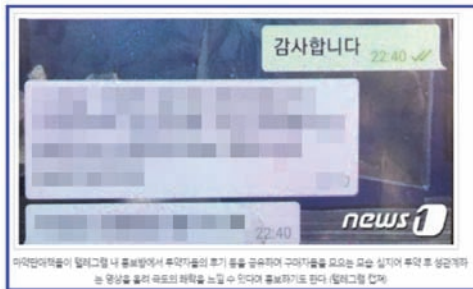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5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 묘사

의결번호	제2022-1129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14일 지방면
기사제목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1. 보도내용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제하의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판매자들은 홍보방에서 투약자

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투약 후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등 SNS가 마약범죄의 온상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중략)

텔레그램에서 판매책들은 투약자들의 후기를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REDACTED]

구매 방법도 쉬웠다. [REDACTED]

판매책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REDACTED]

(후략) 」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및 환각상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7장 폭력묘사

사례. 26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

의결번호	제2022-686호
매 체 명	위키투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6월 12일 라이프면
기사제목	불법 주차에 ‘문자’ 보냈더니…“경찰이 가스총 쏠 때까지 할 것” 황당 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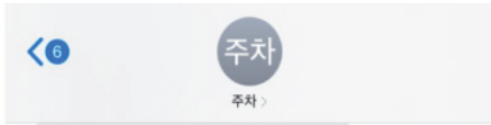
1. 보도내용

「대문 앞 불법 주차에 불만을 표하자 적반하장으로 황당한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뽀뿌’에는 ‘주차관련 욕설’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후략)」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확인가능한 게시글 내 이미지



시정권고 사례집



나 모든거 다읽고살아 빛도많고 가
죽도 다 죽었어 더이상 살기싫어 너
집앞이니까 빨리와 야

내가 어떤 인지 보여줄게

숨어서 신고하지말고

하루종일 집에 올때까지 앞
에서 기다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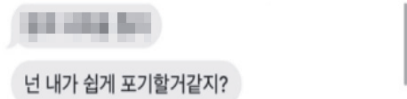


네 지금 이정도의 협박 문자는 징역
행인 거 아시길 바랍니다. 위에 문자
내용이 이정도까지 반응할건가요??

차 안 빼면 구청에 말한다는게

신고왜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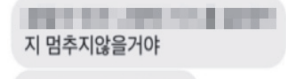
신고하는거 으로나자
니



넌 내가 쉽게 포기할거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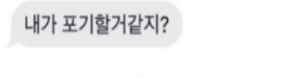
내가 얼마나 집요한 인지 보
여줄게

난 아주 내가 꼭
보여줄게 너 집에 오는순간 보여줄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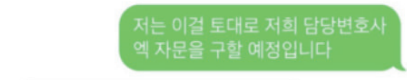


지 멈추지않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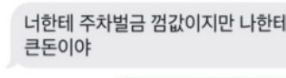
어차피 난 이제 끝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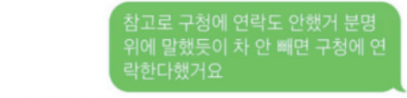
내가 포기할거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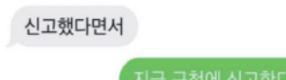
저는 이걸 토대로 저희 담당변호사
역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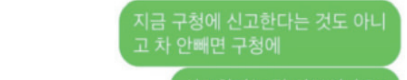
너한테 주차벌금 갚겠지만 나한테
큰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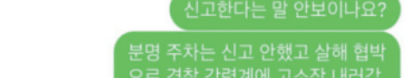
참고로 구청에 연락도 안했거 분명
위에 말했듯이 차 안 빼면 구청에 연
락한다했거요



신고했다면서



지금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아니
고 차 안빼면 구청에



신고한다는 말 안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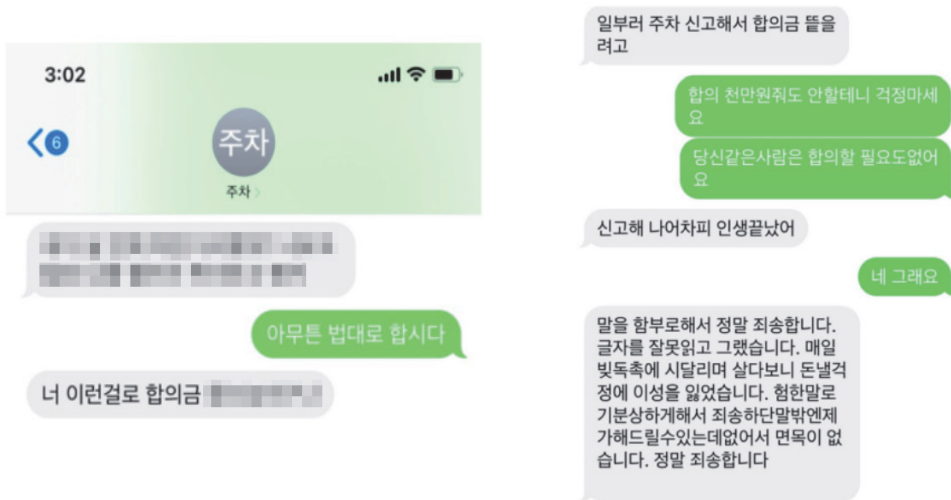


분명 주차는 신고 안했고 살해 협박
으로 경찰 강력계에 고소장 내리갑

제1부
시정권고 현황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원 링크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불법 주차 차량 주인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링크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 원문을 노출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욕설 등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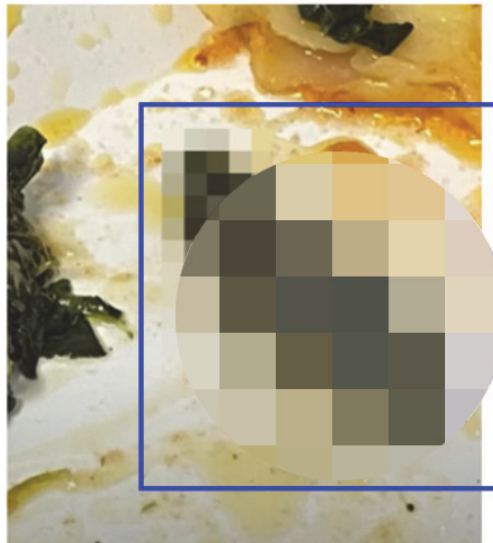
제8장 충격·혐오감

사례. 27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의결번호	제2022-945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7일 국제일반면
기사제목	기내식서 뱀 머리 추정 물질이...승무원 식사 도중 발견

1. 보도내용

「기내식서 뱀 머리 추정 물질이...승무원 식사 도중 발견」 제하의 사진



[특위회 캡처]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의 한 항공기 기내식에서 뱀 머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충분한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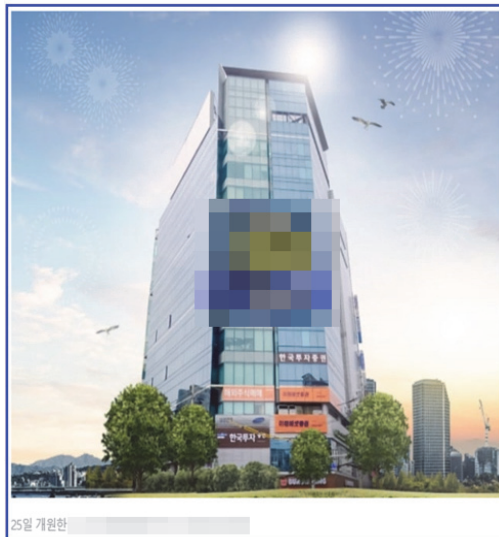
제9장 기사형광고

사례. 28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의결번호	제2022-688호
매 체 명	인터넷 한국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5월 25일 IT·과학면
기사제목	○○○○○○○○ 개원 “서부산권역 척추건강 책임지겠다”

1. 보도내용

「○○○○○○○○ 개원 “서부산권역 척추건강 책임지겠다”」 제하의 사진



「○○○○○○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 30년간 쌓아온 한방 비수술 치료의 노하우를 서부산 권역에도 전파하겠다는 각오다.

○○○○○○은 부산광역시 ○○○에 ○○○○○○○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5일 밤

했다. (중략)

의료진은 ○○○○○○ 국제진료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 병원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됐다.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동작침법(MSAT) 등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한방 비수술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상해 등 척추·관절질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략)

○○○ 병원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했던 서부산 지역 개원을 통해 한방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를 선도할 것”이라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이점과 함께 해외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살려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10장 기사제목

사례. 29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2-1074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17일 엔터면
기사제목	차은우 김세정 열애설 나고 부인했지만 몰래 데이트 하다가 현장 딱 걸린 상황

1. 보도내용

「차은우 김세정 열애설 나고 부인했지만 몰래 데이트 하다가 현장 딱 걸린 상황」의 제목 「걸그룹 아이오아이와 구구단 출신 배우 김세정 그리고 보이그룹 아스트로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열애설이라는 소문에 휩싸이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차은우에게도 커피차를 보내주거나 같이 여러번 셀카를 찍는 등 팬들이 보기에 그냥 친한 사이를 넘어선 듯한 과도한 친목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커플 곰인형을 사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김세정과 차은우는 나란히 곰인형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열애설에 휩싸인 두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0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

의결번호	제2022-839호
매 체 명	인터넷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15일 사회면
기사제목	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1. 보도내용

「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의 제목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